

##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1998. 03. 01  
 개정 : 2015. 04. 03  
 개정 : 2018. 09. 07  
 개정 : 2018. 11. 02  
 개정 : 2019. 03. 04  
 개정 : 2019. 05. 27  
 개정 : 2021. 04. 09  
 개정 : 2021. 08. 06  
 개정 : 2023. 10. 06

담당자 : 평생교육원 (02-950-5535)

### ----- 목 차 -----

|                  |                |                   |            |
|------------------|----------------|-------------------|------------|
|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 제3조(위치)           | 제4조(원장)    |
| 제5조(부원장)         | 제6조(교수진)       | 제7조(팀장 및 실장)      | 제8조(구성)    |
| 제9조(심의)          | 제10조(의결)       | 제11조(임기)          | 제12조(과정)   |
| 제13조(수업기간)       | 제14조(수업일)      | 제15조(지원자격)        | 제16조(선발방법) |
| 제17조(교육과정과 수강인원) | 제18조(학습비 등)    | 제19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 제20조(학위수여) |
| 제21조(학습자 자치회)    | 제22조(학생활동의 금지) | 제23조(포상)          | 제24조(장학금)  |
| 제25조(장학금의 종류)    | 제26조(지급중지)     | 제27조(회계년도)        | 제28조(예산편성) |
| 제29조(수입원)        | 제 30조(회계집행)    |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평생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평생교육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15.02.06)

**제2조(명칭과 위치)** 본 기관은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캠퍼스에 둔다.(개정21.08.06)

**제3조(사업)**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 기획,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국책사업, 프로젝트 수행
4.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21.08.06)

##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2015.04.03)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18.11.02)

③ 삭제(개정21.08.06)

**제5조(부원장)** ① 본 원은 총장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2015.04.03)

② 부원장은 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18.11.02)

**제6조(교수진)** ①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강사를 두며, 교강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04.03.) (개정18.11.02)(개정21.08.06.)

② 삭제(개정2015.04.03) (개정18.11.02)

**제7조(팀장 및 실장)** 삭제 (개정18.11.02)

##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5.04.03)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9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임기)**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교육과정

**제12조(교육과정)** ① 본원의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학습인원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학습인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개정2015.04.03) (개정18.11.02)(개정21.08.06)

② 본원에는 다음의 과정을 둔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
2. 산·학 협력 및 공공기관의 위탁 교육과정
3. 일반교육과정(교양, 콘서바토리, 취미, 봉사, 전문가교육, 자격증취 득, 직업준비 및 재교육 등)(개정 23.10.06.)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 (개정2015.04.03) (개정21.08.06)

③ 학점은행제 학점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관리, 상담 창구 운영 등 학습과정운영에 대하여는 대학의 학칙 및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18.11.02)(개정21.08.06)

**제13조(수업기간)** ① 본원의 수업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21.08.06)

**제14조(수업일)** ① 본원 교양과정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주 수업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개정18.11.02)

③ 삭제 (개정18.11.02)

④ 삭제 (개정18.11.02) (개정21.08.06)

**제15조(지원자격)** ①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확대하거나 학력 및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1.08.06)

② 삭제(개정21.08.06)

③ 삭제(개정21.08.06)

**제16조(선발방법)** ① 본원의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수준을 감안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2015.04.03) (개정21.08.06)

**제17조(교육과정과 수강인원)** ① 본 원의 교육과정 및 수강인원은 매 학기초 원장이 정하고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2015.04.03)

② 삭제(개정2015.04.03.)

**제17조의2(청강제도)** ①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학기에 수강 중인 자
2. 이수한 과목을 추가로 다시 듣고자 하는 자
3. 최대이수학점을 초과하여 듣지 못하는 자
4. 지역사회 구성원
5. 그 밖에 평생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과목교수 및 평생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청강 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강생은 다른 학습자와 동일하게 출석의 의무를 하여야 하며, 수업의 태도가 불량하면 담당교수는 청강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청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청강은 학점 인정 및 성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⑥ 청강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23.10.06]

**제18조(학습비 등)** ① 본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학습비를 학습과정의 시작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1.08.06)

② 일반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8.11.02) (개정21.08.06)

③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학습비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8.11.02) (개정21.08.06)

**제19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4/5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원장 명의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15.04.03)

**제20조(학위수여)** 삭제(개정21.08.06)

##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21조(학습자 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본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

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3조(포상)** ① 수강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며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개정18.11.02.) (개정21.08.06.)

② 삭제 (개정18.11.02.) (개정21.08.06.)

## 제6장 장학금

**제24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수강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원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21.04.09) (개정21.08.06.)

**제25조(장학금의 종류)** 삭제(신설18.09.07) (개정21.08.06.)

**제26조(지급중지)** 삭제 (개정21.08.06.)

## 제7장 회 계

**제27조(회계년도)** 본원 회계연도는 한국성서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입원)**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3. 기타수입 및 보조금

**제 30조(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 수료증서

과정명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소정의  
( 년 개월)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신설2019.03.08>

제 연도 - 000 호

#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위 취득일 :

학위등록번호 : 성서대-학점-연도-일련번호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0조의 의한 규정에 따라 ( )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 00. 00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강 우 정

<신설2019.03.08>

제 연도 - 000 호

# 학 위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위 취득일 :

학위등록번호 : 성서대-학점-연도-일련번호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0조의 의한 규정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 . 00. 00

한국성서대학교 교학처장

취급자인

